

의안번호	2213161
의 퇴 인	고동진 의원
회 답 일	2026. 1. 26.
추 계 번호	25A5407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②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8,000만원(연평균 7,6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	250	—	—	—	—	250	50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안 제11조)	26	26	26	26	26	130	26
합계	276	26	26	26	26	380	76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 설치)	① 대통령의 인공지능산업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을 둔다. ② 인공지능산업정책실에는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9조(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11조(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사업자 측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 부처 업무 조정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인공지능산업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4	안 제12조(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3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6	안 제14조(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의 시책 시행)	정부는 국내의 인공지능산업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산업의 독립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산업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해당 모델에 기반한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의 개발 등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5조(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및 적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준에 따라 관련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할 때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차별 또는 격차를 야기하면 아니 된다.	의무규정
8	안 제16조(인공지능반도체의 우선 확보 및 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활용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국산의 인공지능반도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9	안 제17조(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및 생산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18조(인공지능사업자의 응용 소프트웨어)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응용 소프트웨어·인공지능서비스 및 오픈소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트웨어 및 오픈소스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개발 등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 시행을 위하여 직접 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	안 제19조(인공지능 산업정책센터)	①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지원 및 안보 시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 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 2. 인공지능산업에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지원 3. 인공지능산업의 독립적인 역량 구축과 인공지능산업의 주권 확립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4.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인공지능 거버넌스로의 전환 방안 수립 지원 5. 인공지능산업의 안보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원 6.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및 실증 등에 관한 지원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8.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2	안 제20조(국산 인공지능반도체 활용에 대한 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그 밖에 학교, 기관 및 단체 등의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재량규정
13	안 제21조(공공기관의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우선구매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해당 공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4	안 제22조(권역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인공지능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인프라 환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그 기준에 따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센터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안 제24조(인공지능 산업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및 훈련 시책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6	안 제25조(인공지능 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및 정주 환경 지원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별사증의 대상, 종류, 신청, 발급, 체류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재의 주택 등 정주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7	안 제26조(인공지능 분야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재정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분야의 국내외 우수한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18	안 제28조(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시행)	①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내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통한 국가장학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의무규정
19	안 제29조(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확률·통계 등의 기초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 설치)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을 신설하는 것은 구체적 조직의 구성과 필요 인원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 참고로, 2026년 1월 현재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실이 운영 중으로, 해당 실은 국가의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및 미래대책(인구, 기후 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 중임
2	안 제9조(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3	안 제11조(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	-
4	안 제12조(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정부가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기존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불가능함
5	안 제13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	
6	안 제14조(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의 시책 시행)	×	
7	안 제15조(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및 적용 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정부가 인공지능산업 역량 구축, 일상화 지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인공지능 사업자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산업 인공지능 전환 및 확산 기반조성, 국산센서 개발 지원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8	안 제16조(인공지능반도체의 우선 확보 및 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의 활용 등)	×	
9	안 제17조(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지원)	×	
10	안 제18조(인공지능사업자의 응용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개발 등에 대한 지원)	×	

			<table><tr><td>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td><td>사업개요</td><td>2026</td></tr><tr><td>산업인공지능 (AI)전환및 확산 기반조성 (3174-379)</td><td>기업의 AI 전환(AX, AI Trasnformation) 지원과 산업 전반의 확산 기반 구축 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td><td>1,329</td></tr><tr><td>시장선도를위한 한 국 주 도 형 K-Sensor기술 개발 (3561-305)</td><td>핵심 센서 원천기술,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계속 지원 및 공공분야의 주력센서 국 산화 기술개발신규 지원</td><td>25,128</td></tr></table> 자료: 산업통상부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사업개요	2026	산업인공지능 (AI)전환및 확산 기반조성 (3174-379)	기업의 AI 전환(AX, AI Trasnformation) 지원과 산업 전반의 확산 기반 구축 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1,329	시장선도를위한 한 국 주 도 형 K-Sensor기술 개발 (3561-305)	핵심 센서 원천기술,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계속 지원 및 공공분야의 주력센서 국 산화 기술개발신규 지원	25,128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사업개요	2026										
산업인공지능 (AI)전환및 확산 기반조성 (3174-379)	기업의 AI 전환(AX, AI Trasnformation) 지원과 산업 전반의 확산 기반 구축 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1,329										
시장선도를위한 한 국 주 도 형 K-Sensor기술 개발 (3561-305)	핵심 센서 원천기술,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계속 지원 및 공공분야의 주력센서 국 산화 기술개발신규 지원	25,128										
11	안 제19조(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산업통상부장관이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를 설치할 경우 임차료, 인건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설치될 센터의 규모, 신규 채용 인원, 예상 사업비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12	안 제20조(국산 인공지능반도체 활용에 대한 세제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사업자와 학교·기관·단체 등에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법령에 규정된 조세지원 등 해당자에 적용될 감면 항목을 알 수 없고, 감면 대상자 수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13	안 제21조(공공기관의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공공기관이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구매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불가능함									
14	안 제22조(권역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 전력 공급 인프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경우 건축비, 전기·냉각, IT장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 설치 기간, 공사비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15	안 제24조(인공지능산업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및 훈련 시책 시행)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고급인재 유치와 우수 교원 영입, 인재 육성 등을 실시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원 비용, 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에서 제외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와 인공지능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6	안 제25조(인공지능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및 정주 환경 지원 등)	×	(단위: 백만원) <table><tr><td>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td><td>사업개요</td><td>2026</td></tr><tr><td>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2137-308) (디지털분야해외석학유치지원)</td><td>해외 석학급 최고급 인재의 국내대학(원) 유치를 지원</td><td>3,000</td></tr><tr><td>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2232-327)</td><td>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td><td>10,000</td></tr><tr><td>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2133-304)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td><td>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td><td>40,000</td></tr><tr><td>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2232-302)</td><td>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td><td>21,000</td></tr><tr><td>지역디지털인재양성 (2232-303)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td><td>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td><td>29,022</td></tr><tr><td>생성AI선도인재양성 (2232-314)</td><td>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전문인재 양성</td><td>27,000</td></tr></table>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2137-308) (디지털분야해외석학유치지원)	해외 석학급 최고급 인재의 국내대학(원) 유치를 지원	3,000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2232-327)	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	10,000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2133-304)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40,000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2232-302)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21,000	지역디지털인재양성 (2232-303)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29,022	생성AI선도인재양성 (2232-314)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전문인재 양성	27,000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2137-308) (디지털분야해외석학유치지원)	해외 석학급 최고급 인재의 국내대학(원) 유치를 지원	3,000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2232-327)	최고급 AI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건비 외에 정주여건 제공,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 한국어 교육 등 지원	10,000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2133-304)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	인공지능 핵심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공지능 선도 연구자 집중 양성 - AI 특화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강화, 대학원 교류 확대 등	40,000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2232-302)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 양성	21,000																						
지역디지털인재양성 (2232-303)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전국 5개 권역의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해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무형 SW·AI 전문 인력 양성	29,022																						
생성AI선도인재양성 (2232-314)	대학과 생성AI 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전문인재 양성	27,000																						
17	안 제26조(인공지능 분야 우수 교원 영입을 위한 재정 등 지원)	×																						
18	안 제28조(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시행)	×																						

19	안 제29조(인공지능산업 진 흥을 위한 기초교육)	×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사업개요	2026
			디지털전문·융 합인재양성 (2232-325)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AI 관련 인재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지 원하여 창의·혁신적 소프트 웨어 인재 양성	45,127
			디지털전문·융 합인재양성 (2232-325)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기존산업과 AI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 도록 재직자 AI역량 강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 원 및 디지털 전환 전문가 양성 등	8,4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①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 ②인공지능산업발전 특별위원회(안 제11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안심사와 사업준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5년마다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027년에 2억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준용

- 2026.1.22.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¹⁾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예정액(2억 5,000만원)을 준용함
-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	250	-	-	-	-	250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3,000만원(연평균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26명, 회의 횟수는 분기당 1회씩 연 4회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11조제2항에 따라 30명으로 하고,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의 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정원 30명에서 당연직 위원 4명을 제외한 26인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고려하여 1회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함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2)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3,000만원(연평균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2027~2031년: 민간위원 수(26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2,600만원

[표 3]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안 제11조)	26	26	26	26	26	130	2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assembly.go.kr